

#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 선출 규정

제정 2013년 12월 5일

개정 2017년 8월 31일

제1조 (총칙) 본 규정은 정관 제14조 ③항에 의거 수석부회장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다.

제2조 (후보의 자격) 수석부회장 후보자는 한국원자력학회 정회원에 한한다.

제3조 (선거인) 수석부회장의 선거인은 평의원으로 한다.

제4조 (선거관리) 선거공고, 투표 및 개표 등 선거의 관리는 이사회가 관장한다.

제5조 (후보등록 및 선거운동) ①학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석부회장 선거를 수석부회장 선출 평의회 개최 4개월 전에 공고한다.

②후보자는 수석부회장 선출 평의회 개최 3개월 전까지 수석부회장 입후보 신청서 및 출마소견을 제출하여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, 학회는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한다.

제6조 (선출방법) ①평의원회의 투표를 통해 출석 평의원의 2/3 이상 득표자를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하며 만약 출석 평의원 2/3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수 득표 상위 2명의 후보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.

②만약 2차, 3차 등 재투표에서 후보자 1명만이 입후보 하는 경우 신임투표를 통하여 출석 평의원 2/3 이상의 득표를 하여야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다.

③수석부회장 선출결과는 학회홈페이지에 게시한다.

제7조 (승인) 선출된 수석부회장은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